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26호 2022. 8. 22.(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124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125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125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2년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 등을 반영하고, 현안 업무 과중 부서에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979명 ⇨ 1,006명 (增 27명)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안 [별표2]) : 별정직 공무원 추가
-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안 [별표3])
 - ▶ 정원 총계 : 979명 ⇨ 1,006명 (+27)
 - ▶ 일반직 계 : 974명 ⇨ 1,000명 (+26)
 - 6급 이하 : 907명 ⇨ 933명 (+26)
 - ▶ 별정직 계 : 3명 ⇨ 4명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kjj411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79명” 을 “1,006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57명” 을 “984명” 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30% 이내	5% 이상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 구 관	연 구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 이내	25% 이내	25% 이내	25% 이상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 계	1,006	638	22	89	26	231
정무직 계	1	1	-			
구청장	1	1	-			
일반직 계	1,000	632	22	89	26	231
3급	1	1	-			
4급	7	5	1	1		
5급	59	32	2	9	1	15
6급 이하	933	594	19	79	25	216
연구직 계	1	1	-			
연구사	1	1	-			
별정직 계	4	4	-			
5급 상당	1	1	-			
6급 상당 이하	3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
<u>979명</u> 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 <u>1006명</u> -----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
다음과 같다.	-----.
1. 집행기관 : <u>957명</u>	1. ----- : <u>984명</u>
2. 의회사무기구 : <u>22명</u>	2. ----- : <u>22명</u>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 및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한 기구 개편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국 조정

3. 주요내용

☐ 국 직제변경 및 폐지

- 국 명칭 및 직제 변경

- 행정안전국 ⇨ 자치행정국(안 제4조)
- 주민복지국 ⇨ 복지재정국(안 제5조)
- 경제환경국 ⇨ 경제교통국(안 제5조의 2)
- 도시관리국 ⇨ 도시환경국(안 제6조)

- 교육문화자치국 폐지

☐ 사업소 신설(안 제2조, 제10조~제12조)

○ 도서관정책과 폐지 및 사업소(연수청학도서관)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kjj411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 기관”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실·단·과”를 “단·실·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자치행정국, 복지재정국, 경제교통국, 도시환경국, 송도관리단,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복지재정국) ① 복지재정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복지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경제교통국) ① 경제교통국에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경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 과 같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환경보전과, 지적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4” 과 같다.

제7조제2항 중 “ “별표 6” 과” 를 “ “별표 5” 와” 로 한다.

제4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제5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으로 하고, 제9조 다음에 제4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6” 과 같다.

제11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사업소장” 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하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2(종전의 별표 3)부터 별표 4(종전의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³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상황실란 중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연수구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위생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

별표 5의 비고란 중 “자원순환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 4 조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6.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7.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8.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1.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3.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6.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7.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18.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19.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20.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2.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3. 행정간행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5.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6.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27.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8.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다른 국·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 2】

사 무 분 장 표 (제 5 조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복지재정국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0.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자활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4. 여성·가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저출산대책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8.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19.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0.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2.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23.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24.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7.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8.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30.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1.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2.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33.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복지재정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3】

사 무 분 장 표 (제 5 조 의 2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경제교통국	1. 물가안정 · 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연료수급 및 유류 · 가스에 관한 사항 4. 농 · 축 · 수산 및 양정 유통에 관한 사항 5.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6.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7.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 8.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 11.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에 관한 사항 13.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15.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17.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22.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23.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4.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25.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26.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9.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경제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 6 조 관 련)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환경국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 9.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 1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 사업에 관한 사항 15.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21.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2.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23.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4.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2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7.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9.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0.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31.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3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도시환경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별표 6】

도서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 구역
연수청학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연수구 일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부서장, <u>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 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단·과의 사무분장</u>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 ----- ---, -----, <u>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u> ----- <u>단·실·과</u> ----- -----.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u> 을 둔다.	제3조(국 등의 설치) ----- ----- <u>자치행정국, 복지재정국, 경제교통국, 도시환경국, 송도관리단,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u> -----.
제4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u>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u> 를 둔다. ② <u>행정안전국장의 분장사무</u> 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u>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u> 를 둔다. ② <u>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u> 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교육문화자치국) ① 교육문화자치국에 <u>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도서관정책과</u> 를 둔다. ② <u>교육문화자치국장의 분장사무</u> 는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5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
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
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
육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 과 같다.

제5조의2(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
국에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
지과,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 와 같다.

제6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
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
원과, 공간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 와 같다.

제7조(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
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 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5조(복지재정국) ① 복지재정국
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
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복지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제5조의2(경제교통국) ① 경제교통
국에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경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 과 같다.

제6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
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환경보
전과, 지적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4” 와 같다.

제7조(설치) ① (생 략)
② -----

----- “별표 5” 와 ----.

제4장 사업소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민선8기 핵심가치인 소통·통합·안전의 연수 실현을 위한 구청장 자문기구 필요
-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자문단 설치 및 기능(안 제2~3조)
- 자문단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4~5조)
- 자문단 회의운영 (안 제6~7조)

- 자문단 위원 해촉(안 제8조)
- 간사 및 서기, 수당 등 행정지원(안 제9조~10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1조)
- 자료제출 등의 요청(안 제12조)

4. 의견제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2.8.2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kjj411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붙임 1] 조례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 본청의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줄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자문단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